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동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6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위원 정원의 상한 확대(안 제6조제2항)	3
2. 연구관 제도 도입(안 제14조의4 신설)	7
3. 원격영상회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11
4.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17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2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이러한 고용노동 분쟁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원활한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등이 필수적임

이에 ① 영상 심문회의 개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고, ②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③ 또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어 부문별 회의 구성 등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50%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나.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건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대면 심문회의에 추가하여 중계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노·사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사건 당사자들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원 정원의 상한 확대(안 제6조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 정원의 상한을 50% 확대하여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각 ‘10명 이상 75명 이하’로, 공익위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105명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② ----- ----- ----- -----, ----- -----.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u>50명</u> 이하	1. ----- ----- <u>75명</u> -----
2. 공익위원: 10명 이상 <u>70명</u> 이하	2. ----- <u>105명</u>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조제2항¹⁾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그 상·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즉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동수로 하고, 공익위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위원 수는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2]²⁾에서는 각 노동위원회별 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노동위원회 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총 정원은 1,805명이며, 이 중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은 170명,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은 1,635명이고,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535명, 공익위원은 73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건의 쟁점 또한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공익위원 정원의 상한은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으며, 각 노동위원회별 위원 정수 역시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1)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2) 참고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노동위원회법」 상 위원 수 개정 연혁 >

연혁	위원 수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
1997.3.13., 제정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 각 7인이상 2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1999.4.15. 개정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 각 10인이상 3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2007.1.26. 개정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 수는 2017년 14,248건에서 2024년 23,963건으로 68.2% 증가하였고,³⁾ 부문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사건 배정이나 제척·기피 등에 따라 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위원 선정에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위원 1인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어, 심판회의 참석 전 사건 검토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심문회의 부실 운영 등의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임.⁴⁾

이에 개정안은 노·사·공익위원 간 비중은 유지하면서 노동위원회 위원 정원의 상한을 상향하여 위촉 가능한 위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충실한 사건 검토, 부문별 위원회 구성의 원활성 확보, 내실 있는 심문회의 운영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17년 14,248건 → '23년 21,394건(50.2% 증가) → '24년 23,963건(68.2% 증가)

4) 이태일리, “주말 없이 매일 70쪽 보고서…쟁점 분석은커녕 노사 입장 정리하기 급급”, 2025.10.1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용노동 분쟁의 내용 또한 전형적인 노사분쟁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과 같은 노노 분쟁이나 원하청 분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사건 증가에 따른 부문별 회의 구성의 애로점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정원 상한 확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2. 연구관 제도 도입(안 제14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노동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을 두고, 연구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등 연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4(연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노동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을 둔다. ② 연구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등 연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4조에서는⁵⁾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관이 위원장 등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에 필

5)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한 조사를 하고,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분쟁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어 차별시정뿐만 아니라 조정 심판 전반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순환보직, 비상근 위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노동위원회에 장기 근속하며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연구관 신설을 통해, 화해, 조정 및 판정에 관한 조사와 연구, 주요 사건 처리결과 분석, 소송사건 결과 및 판례 분석 등 노동위원회 제반 업무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도록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형태도 다양화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나, 그 수단으로서 법률에 연구관을 두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률로서 연구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법원조직법」 상 재판연구관,⁶⁾ 「헌법재판소법」 상 헌법연구관⁷⁾, 「검찰청

법」 상 검찰연구관⁸⁾ 등에 한정되고, 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

-
- 6)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7)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개정 1991.11.30., 2003.3.12., 2011.4.5.>)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4.5.>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4.5.>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4.5.>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삭제<2003.3.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4.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4.5., 2025.12.23.>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소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 8) 「검찰청법」 제15조(검찰연구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정」 등에 근거하여 연구직공무원을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 및 직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여 연구관 제도를 법률로 규율할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8조⁹⁾에 따라 대통령령¹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 없이 기존의 직제 규정 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임.

9)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10) 현재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규정 중

3. 원격영상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대면 방식의 심문회의에 추가하여 중계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활용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 참여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의 신청,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16조의3 (생략)	제16조의3·제16조의4 (현행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6조는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¹¹⁾

11)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화해·심문회의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당사자·관계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용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¹²⁾

이에 개정안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원격영상회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사 당사자의 접근성과 절차 참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노동위원회는 2020. 6. 17.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비대면 영상 심문회의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제13호 및 제11조의2에 따라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음.¹³⁾¹⁴⁾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2) 김재희, “노동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검토”, 사회법연구 제56호, 2025, p. 255.

13) 「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원격영상회의”란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회의와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 제67조의 단독심판회의 중 해당 부문별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건관장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신설 2020. 6. 17., 개정 2024. 2. 14.>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원격영상회의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위원,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계시설이 설치된 노동위원회 등 희망하는 원격영상회의 출석장소와 신청 이유를 별지 제57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실시여부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제3항의 승인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 외 당사자의 원격영상회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4. 2. 14.>

⑤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원격영상회의의 대상은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 화해회의, 각종 조정·중재회의와 쟁점설명기일, 단독심판회의 등이 그 대상으로 되나,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는 제외되고,¹⁵⁾

노동위원회 심판정의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어, 인터넷 화상장치, 즉 참석자가 구비한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으로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형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원격영상회의의 대상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의’라고 하여 전원회의를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회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도 가능하도록

인정하거나 인적·물적·기술적 요소, 심문회의 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불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⑥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14.>

⑦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는 신청 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실시 여부는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4. 2. 14.>

⑧ 원격영상회의는 승인 후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의 원격영상회의는 취소된다.

1. 당사자의 신청 취하 또는 참여 철회
2.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제5항의 사유에 따른 직권 원격영상회의 취소 <신설 2024. 2. 14.>

⑨ 제8항제1호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참여 신청한 상대 당사자에 대하여는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상대 당사자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2. 14.>

⑩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이용하여 분리심문을 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본조신설 2020. 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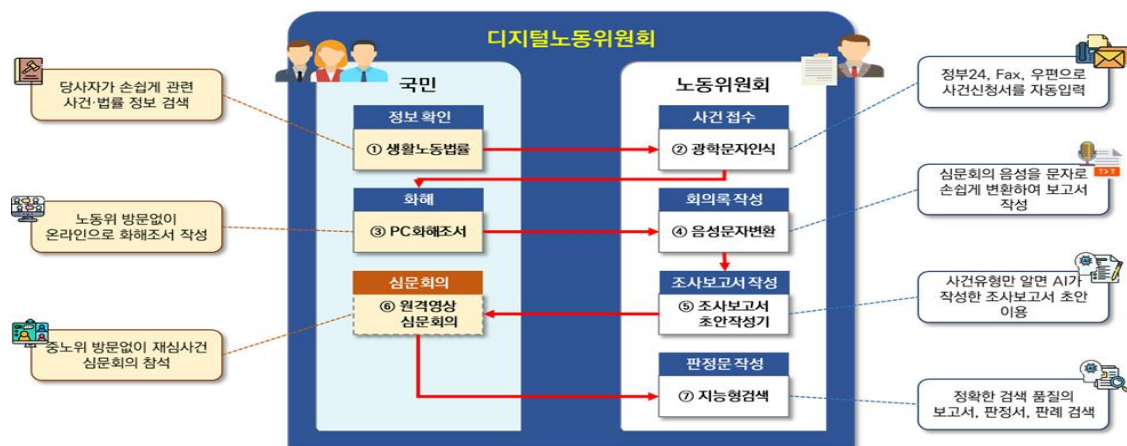
14)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본격적으로 영상심문회의 시스템 구축을 개시하고, 2024. 2. 20자로 노동위원회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제정된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칙 내용을 실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정·신설하였고, 2024. 6.부터 영상심문회의를 실시하기 시작함.

15) 「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제13호

록 근거를 추가하였음.¹⁶⁾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그간 「노동위원회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원격영상회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영상 심문회의의 구축 시스템 >



자료: 노동위원회

다만,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는 신청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정 간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현재 영상심문회의의 시스템은 세종·서울·경기·부산 등 9개소 설치, ‘27년까지 전체 지노위(13개소)에 구축 예정임.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집, 사무실에서의 회의 참석이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한 기간 필요하다는 설명임.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사업은 2025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현재는 노동위원회규칙대로 노동위원회 심판정 중계시설을 통해 원격영상회의만 가능한 상태임.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의2제2항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1항에 신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두거나, 제2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규정 체계의 정리가 필요해 보임.

< 노동위원회 규칙 및 개정안 비교 >

노동위원회 규칙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원격영상회의"란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회의와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쟁점설명기일, 제67조의 단독심판회의 중 해당 부문별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건관장 노동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신설 2020. 6. 17., 개정 2024. 2. 14.>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원격영상회의는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u>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u> 심판위원회 위원,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계시설이 설치된 노동위원회 등 희망하는 원격영상회의 출석장소와 신청 이유를 별지 제57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원격영상회의를 <u>신청할 수 있다.</u> <개정 2024. 2. 14.>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실시여부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의 승인	제16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의는 <u>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u>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의 <u>신청, 운영 등</u>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개 정 안
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④ ~ ⑩ (생 략)	

4.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사건 당사자들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자문서 제출과 관련하여, 당사자, 대리인 등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의3제1항),

둘째, 전자송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노동위원회 등은 ①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 ②노동위원회 처분 결과, ③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분 및 ④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의3제2항),

셋째, 전자송달의 통지와 관련하여, 사건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송달에 따른 통지는 사건의 대리인에게 하도록 하고(안 제17조의3제3항),

넷째, 전자송달의 방법과 관련하여, 송달 또는 통지는 조사관이 송달 또는 통지할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안 제17조의3제4항),

다섯째, 전자송달의 간주와 관련하여,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안 제17조의3제5항),

여섯째, 전자송달 간주 기간의 예외와 관련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간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며(안 제17조의3제6항),

일곱째,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고 규정하였음(안 제17조의3제7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3(전자문서 및 전자송달·통지) ① 당사자, 대리인 등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 및

현행	개정안
	<u>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u> <u>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노동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u> <u>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u> <u>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처분 결과</u> <u>3.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분</u> <u>4. 제23조제5항에 따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분</u>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이 법에 따라 송달하거나 통지하는 문서</u> <u>③ 사건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송달에 따른 통지는 사건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조사관이 송달 또는 통지할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 (생략)	⑤ 제2항의 경우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이나 통지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의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송달·통지의 대상,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4 (현행 제17조의3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의2¹⁷⁾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이유서·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열람 시 송달된 것으로 보며 일정 기간 내 미확인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전자송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 다만, 판정서·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 등 주요 처분문서는 전자송달 대상에서 제외됨.

개정안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 제출 및 전자송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 17) 「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의2(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유서·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
-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할 경우, SMS문자, 전자우편주소(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사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송달과 통지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에 동의한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⑤ 전자송달 등록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⑥ 송달받을 자가 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송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 전자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기획총괄과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2. 13.]

당사자들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함으로써 전자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전자송달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민사절차의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¹⁸⁾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송달의 방법, 송달 간주 시점 및 시스템 장애 시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에서도 「행정절차법」 제14조¹⁹⁾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허용하고 있음.

-
- 1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9)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또한, 조세 분야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30조²⁰⁾에서 전자송달의 근거를 두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의 구조를 참고하여 전자적 송달의 근거와 기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자적 절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전자문서’ 정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과 전자적 송달·통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방법과 효력 및 세부 절차를 규정하려는 내용임. 이에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제출과 송달·통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안 제17조의3제7항)²¹⁾을 부여하면서도, 전자문서의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입법례를 보면,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전자문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거나(「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20)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안 제17조의3(전자문서 및 전자송달·통지) ⑦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를」 등)²²⁾ 타법에 규정된 정의 규정을 인용하는 방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²³⁾ 등으로 해당 법률에서 적용하
려고 하는 전자문서를 정의하고 있음. 반면, 별도의 정의 규정 없이
전자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²⁴⁾ 입법례도 존재함.

이러한 점에서 전자문서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행 「노동위
원회규칙」 제2조제12호²⁵⁾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둘째, 체계와 관련하여, 안 제17조의3제7항²⁶⁾은 전자문서의 작성·제

2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0., 2020. 6. 9.>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5) 「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출·송달·보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법률에서는 제출 및 송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작성 및 보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제7항의 ‘작성’ 및 ‘보존’ 문구가 전자문서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작성’ 및 ‘보존’ 문구의 필요성 및 규정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35

26) 안 제17조의3(전자문서 및 전자송달·통지) ⑦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참고1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2])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 관련)

명칭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심판 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조정 담당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50	50	33	17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50	50	33	17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50	50	33	17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40	40	26	14	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30	30	19	9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30	30	19	9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30	30	19	9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30	30	19	9	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5	25	16	8	11

※ 비고: 조정담당 공익위원의 수에는 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추는 것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2조(원격영상재판장치) ① 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 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